검수규정 4-5-1

규정번호 4-5-1
제정일자 1997.4.29
최근개정 2018.8.27
개정차수 5차 개정
관리부서 구매시설팀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리대학에서 행하는 물품의 구매·수리 및 시설공사의 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검수라 함은 물품의 구매·수리 및 시설공사의 완성내용을 구입결의서, 납품서, 시방서 등의 서류와 대조하여 확인하고 그 지급대가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일을 말한다.

제3조(담당부서) ① 물품구매의 검수자는 다음과 같다.

1. 물품요구부서
2. 총장이 지명하는 자
3. 산학협력팀(교육용 물품의 검수)(개정 2017.02.27., 2018.08.27.)

② 구매담당 부서에서는 물품검수에 입회하여야 한다.

③ 다음의 경우는 발주부서의 확인으로 검수를 대신할 수 있다.

1. 차량유지에 필요한 품목
2. 외부에 직접 전달하여야 할 화환·기념품 등

제4조(검수방법) ① 물품의 구매·수리 및 시설공사의 발주부서는 원안 결재서류와 계약서·시방서도면·견본안내책자·견본 등 검수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검수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.

② 검수자는 발주부서에서 송부한 서류와 납품한 현품 및 공사내용을 대조하여 다음 사항을 검수한다.

1. 전 항에서 규정한 현품 및 공사 내용과 관계 서류와의 일치여부
2. 납기이행여부
3. 구매(공사) 가격의 적정여부
4. 파손·변질·감손여부

③ 검수자는 검수를 마친 후 원안서류에 검수필 인을 날인하거나 검수조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작성하여 관계 서류와 함께 발주부서에 이송한다.

④ 품질에 대한 성분 또는 함량 및 수리·시설·공사내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내의 전문가 또는 외부 공인기관에 이를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 소정의 서류가 갖추어 지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검수하지 아니하나 발주부서장이 검수의뢰서(별지 제2호 서식)에 의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가검수를 할 수 있다. 다만, 발주자료가 구비되는 대로 본 검수를 하여야 한다.

⑥ 운송업자에 의하여 배달된 물품으로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운송업자 및 관계자의 입회

하에 확인서를 작성하여 증거로 보관하여야 한다.

⑦ 구입물품 또는 시설공사가 소액(10만원 미만)인 경우에는 검수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
제5조(검수책임) ① 검수자는 검수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② 입회자의 입회 아래서 검수한 때에는 입회자와 검수자는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.

제6조(사전 사용금지) 검수할 물품 및 시설물은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 사전에 사용할 수 없다.

제7조(검수거부)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검수를 거부할 수 있다.

1.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이상이 있을 때
2. 제6조에 해당하는 사전 사용이 있을 때
3. 구매 서류상에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

② 제1항 각 호의 해당을 이유로 하여 검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검수담당자는 검수거부사유서(별지 제3호 서식)를 작성하여 즉시 발주부서로 반송한다.

제8조(재검수) 검수거부로 인하여 서류를 반송받은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에 조치하여 재검수 요청을 하여야 한다.

제9조(검수결과 처리) ① 제8조에 의한 재검수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검수자는 그 사실을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재검수 결과도 아울러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빈번한 하자의 발생으로 우리대학에 재정상의 손실을 끼치거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검수자가 거래의 중지를 품신할 수 있다.

제10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검수부서장과 발주부서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학칙) <2009.2.26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개정) <1> - <46> <생략>

<47> 검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2호 중 “학장”을 각각 “총장”으로 한다.

<48> - <102> <생략>

부 칙(학칙) <2010.3.1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개정) <1> - <26> <생략>

<27> 검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①항 3호의 “산학협력과”를 각각 “산학협력팀”으로 한다.

<28> - <49> <생략>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,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물 품 검 수 조 서

품 목·수 량	
납 품 자	
계 약 금 액	
계 약 체 결 년 월 일	
납 품 기 한	
검 수 년 월 일	
검 수 장 소	

위와 같이 검수하였음

년 월 일

검 수 자 과 직 성 명

입 회 자 과 직 성 명

물 출 등납품 부 기
물 품 출납원

[별지 제2호 서식]

검 수 의 뢰 서

수 신 :　　의 뢰 :
발 신 :　　증빙서 :

건명		청구 및 요청부서		의뢰부서장	㊞
아래와 같이 검수 의뢰함. 구매담당자 : ㊞ 년 월 일					

번 호	적 요	규격	단위	수량	단 가	금 액	납 품 처	납품예정일
계								

[별지 제3호 서식]

검수거부 사유서

품 목	
규 격	
제 조 회 사	
수 량	
금 액 (단가)	
납 품 처	
거 부 사 유	
비 고	

년 월 일

검 수 자 : ㊞

[별지 제1호 서식]

물 품 검 수 조 서

품 목·수 량	
납 품 자	
계 약 금 액	
계 약 체 결 년 월 일	
납 품 기 한	
검 수 년 월 일	
검 수 장 소	

위와 같이 검수하였음

년 월 일

검 수 자 과 직 성 명

입 회 자 과 직 성 명

물 출 등납품 부 기
물 품 출납원

[별지 제2호 서식]

검 수 의 뢰 서

수 신 :　　의 뢰 :
발 신 :　　증빙서 :

건명		청구 및 요청부서		의뢰부서장	㊞
아래와 같이 검수 의뢰함. 구매담당자 : ㊞ 년 월 일					

번 호	적 요	규격	단위	수량	단 가	금 액	납 품 처	납품예정일
계								

[별지 제3호 서식]

검수거부 사유서

품 목	
규 격	
제 조 회 사	
수 량	
금 액 (단가)	
납 품 처	
거 부 사 유	
비 고	

년 월 일

검 수 자 : ㊞